관리 번호	자연재난-1

「풍수해(태풍 · 호우, 대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26. 6.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행정안전부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488호)」을 근거로 「풍수해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 · 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부처 · 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풍수해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 목 차 -

①호우 · 태풍

Ⅰ. 일반사항

1. 목 적 ····· 5
2. 적용 범위 ····· 5
3. 관련 법규 ····· 6
4. 용어 정의 ····· 7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 11
2. 전개 양상 ····· 12
3. 위기관리 체계 ····· 13
 가. 종합체계도 ····· 13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14
4. 위기관리기구의 대응체계 ····· 17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 ····· 17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응체계 ····· 21
 다.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24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28
2. 방 침 ····· 28
3. 위기징후 감시 ····· 29
 가. 위기징후 목록 ····· 29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29
4. 위기 평가 ····· 31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32
가. 위기경보 수준 ····· 32
나. 위기경보 절차 ····· 33
6. 비상근무체계 ····· 35
가. 구성원별 임무 ····· 35
나.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 36

Ⅳ.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1. 예방 단계 ····· 40
2. 대비 단계 ····· 45
3. 대응 단계 ····· 60
4. 복구 단계 ····· 76

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1. 즉시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 준비사항 ····· 83
2. 본부장 역할 ····· 85

Ⅵ. 기관대응 수칙 ····· 89

Ⅶ. 부 록

1. 과거 피해 사례 ····· 103
2. 수습지원단의 임무와 편제 ····· 105
3.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 106
4.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 107
5. 기상특보 발표기준 ····· 111

②대설

Ⅰ. 일반사항

1. 목　　적 ····· 117
2. 적용 범위 ····· 117
3. 관련 법규 ····· 118
4. 용어 정의 ····· 119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 123
2. 전개 양상 ····· 123
3. 위기관리 체계 ····· 124
가. 종합체계도 ····· 124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125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128
라. 중앙사고수습본부 ····· 132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137
2. 방　침 ····· 137
3. 위기징후 감시 ····· 138
가. 위기징후 목록 ····· 138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38
4. 위기 평가 ····· 140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141
가. 위기경보 수준 ····· 141
나. 위기경보 절차 ····· 142

6. 비상근무체계 ····· 144
가. 구성원별 임무 ····· 144
나.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 144

Ⅳ.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1. 예방 단계 ····· 148
2. 대비 단계 ····· 152
3. 대응 단계 ····· 166
4. 복구 단계 ····· 184

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1. 즉시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 준비사항 ····· 190
2. 본부장 역할 ····· 192

Ⅵ. 기관대응 수칙 ····· 195

Ⅶ. 부 록

1. 최근 10년간 주요 대설 피해 ····· 205
2. 수습지원단의 임무와 편제 ····· 206
3.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 207
4.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 208
5. 기상특보 발표기준 ····· 212

【제·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12.12.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운영 : 소방방재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맞춰 변경 등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계기 『국가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 일제 정비	[redacted]	민간전문가 등 TF 협의체
’13.07.15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등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기준 마련에 따른 개정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14.02.10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18호, 2013.8.30.) 교육부 등 중앙부처 비상연락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14.2.7.시행) 개정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15.09.10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16.06.09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기준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매뉴얼협의회
’17.10.10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등	정부조직개편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매뉴얼협의회
’18.03.16	재난관리 체계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반영	재난관리 체계도 변경(’18.1.18)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18.06.29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기관별 임무 및 역할, 호우특보 발표기준 등	정부조직법 개정(’18.6.8)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매뉴얼협의회
’18.12.20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88호, 2018.09.04.)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 개정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매뉴얼협의회
’19.01.16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반영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기준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19.06.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기준 등	중대본 운영 규정 개정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19.10.08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추가 등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추가 등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20.03.27	중대본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중대본 실무반 편제 수정 등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22.07.31	기관별 임무·역할, 민방위시설 추가 등 개정사항 반영	표준-실무 누락된 임무역할 보완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매뉴얼 협의회
‘23.10.1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및 구급체계 개편, 위기관리기구도 수정 등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강화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매뉴얼 협의회
‘25.6.12	집중호우 빈발시기(장마철 등) 위기경보 ‘주의’ 상향 및 비상근무 체계 개편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강화	[redacted]	유관기관 의견조회, 매뉴얼 협의회



①호우·태풍

Ⅰ

일반사항

1. 목 적
2. 적용 범위
3. 관련 법규
4. 용어 정의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매뉴얼은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풍수해(태풍·호우) 재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임.

2 적용 범위

가.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 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

나. 태풍·호우 피해 저감을 위해 주요 시설물별로 방재기준을 적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이 필요할 때 적용

다. 태풍·호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가 대규모 또는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에 적용

(1) 강풍, 풍랑, 폭풍해일로 인하여 시설물의 파손 및 비산물, 선박의 침몰, 침수, 대규모 정전 및 통신장애,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 등의 피해

(2)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피해

3 관련 법규

가.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488호)

나. 관련 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2) 기상법 , 산림보호법 , 산지관리법

3) 재해구호법 , 초·중등교육법

4) 농어업재해대책법

5) 하천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항만법 , 어촌·어항법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한국수자원공사법

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관련 규정, 지침 등

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예규)

2)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3)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훈령)

4)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5)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해양수산부예규)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4 용어 정의

구분	내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활동과정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유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경보	위기징후를 식별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제공·경고하는 것
위기경보의 종류	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 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재난 관리 단계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구분		내용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비상상황		•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비상상황	결과수습형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 재난의 전조가 없어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관심」 ~ 「경계」 불필요)
비상상황	완만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 위기경보 「관심」~「심각」까지 순차적으로 발령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
비상상황	순간증폭형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수준이었으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중대 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유형 • 2차 피해가 발생 가능한 폭발점 확인 및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태풍		•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 이상인 것
기상특보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특보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특보	호우주의보	•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기상특보	호우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2. 전개 양상
3. 위기관리 체계
4. 위기관리기구의 대응체계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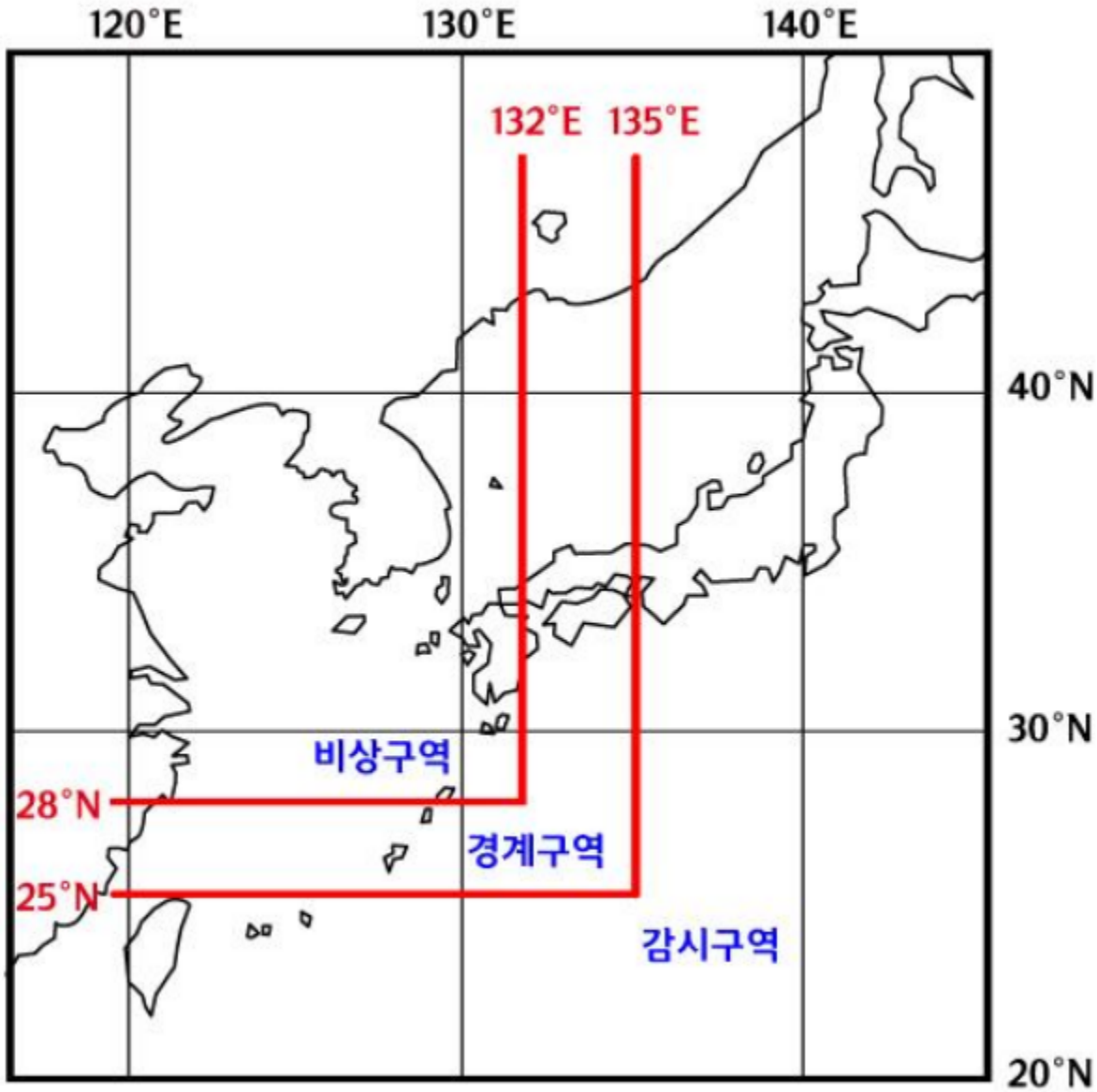
1 위기 유형

유형	형태	비고
강풍	• 벼 등 농작물 쓰러짐, 사과 등 과일 낙과 •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파손	농림축산식품부
	• 도로 등 주요 시설물 파괴 및 비산물 파괴 • 항공기·철도·지하철 운행중단 및 도로교통 두절	국토교통부 (지자체)
	• 댐 관련 주요 시설물 파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 선박의 직·간접 피해 •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 피해 • 연안지역 침식피해 및 해상 교통두절 등 • 수산양식시설(생물) 및 어망·어구 등 피해 • 어항시설 및 공사현장 피해	해양수산부
	• 대규모 정전사태 및 통신장애	기후에너지환경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 농경지 유실·매몰, 저수지 등 수리시설 파손 •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침수 및 파손 • 벼 등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농림축산식품부
	• 어항기능 약화 : 항내 토사 매몰	해양수산부
	•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침수, 산사태(토석류 포함), 시설물 파괴 • 교통두절 – 인원 및 물자 수송 곤란 • 항공기·철도·지하철 운행중단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 하수도, 댐 관련 범람·침수, 시설물 파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 대규모 정전사태 및 통신장애	기후에너지환경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폭풍 해일	• 방조제 등 파손, 농작물 염해 피해	농림축산식품부
	• 수산양식시설(생물) 및 어망·어구 등 피해 • 어항시설 피해 • 침수, 범람에 의한 해양수산시설물 피해 • 선박의 직·간접 피해 : 침몰·파손, 기름 유출에 의한 피해 • 항만시설 피해 • 항만 적재화물 피해, 해상교통 두절	해양수산부

2 전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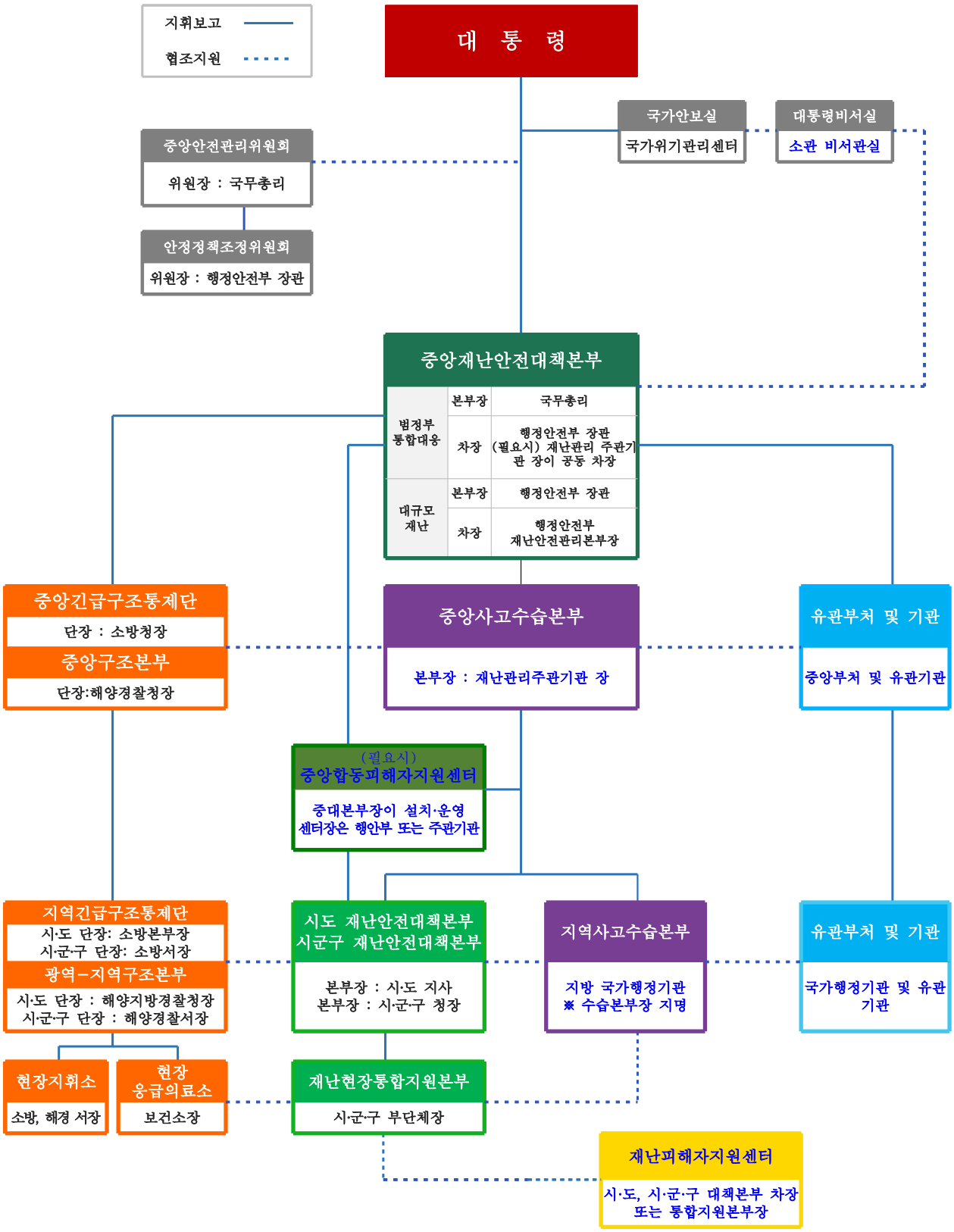
태풍 단계별 구역 및 상황전개

구분	기준
비상구역	북위 28° 북쪽 및 동경 132° 서쪽이 겹치는 구역
경계구역	북위 25° 북쪽 및 동경 135° 서쪽이 겹치는 구역에서 비상구역을 제외한 구역
감시구역	북위 25° 남쪽 또는 동경 135° 동쪽의 북서태평양 구역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분야 위기관리체계를 기획·조정하고,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을 제시하며, 국민 안정대책을 총괄·조정하는 등 대통령의 재난분야 국정수행을 보좌
대통령비서실 (소관 비서관실)	•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분야 위기관리체계를 기획·조정하고,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을 제시하며, 국민 안정대책을 총괄·조정하는 등 대통령의 재난분야 국정수행을 보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 재난사태의 선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등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 사전 검토 및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약칭: 중대본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약칭: 중수본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사고수습 • 재난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 • 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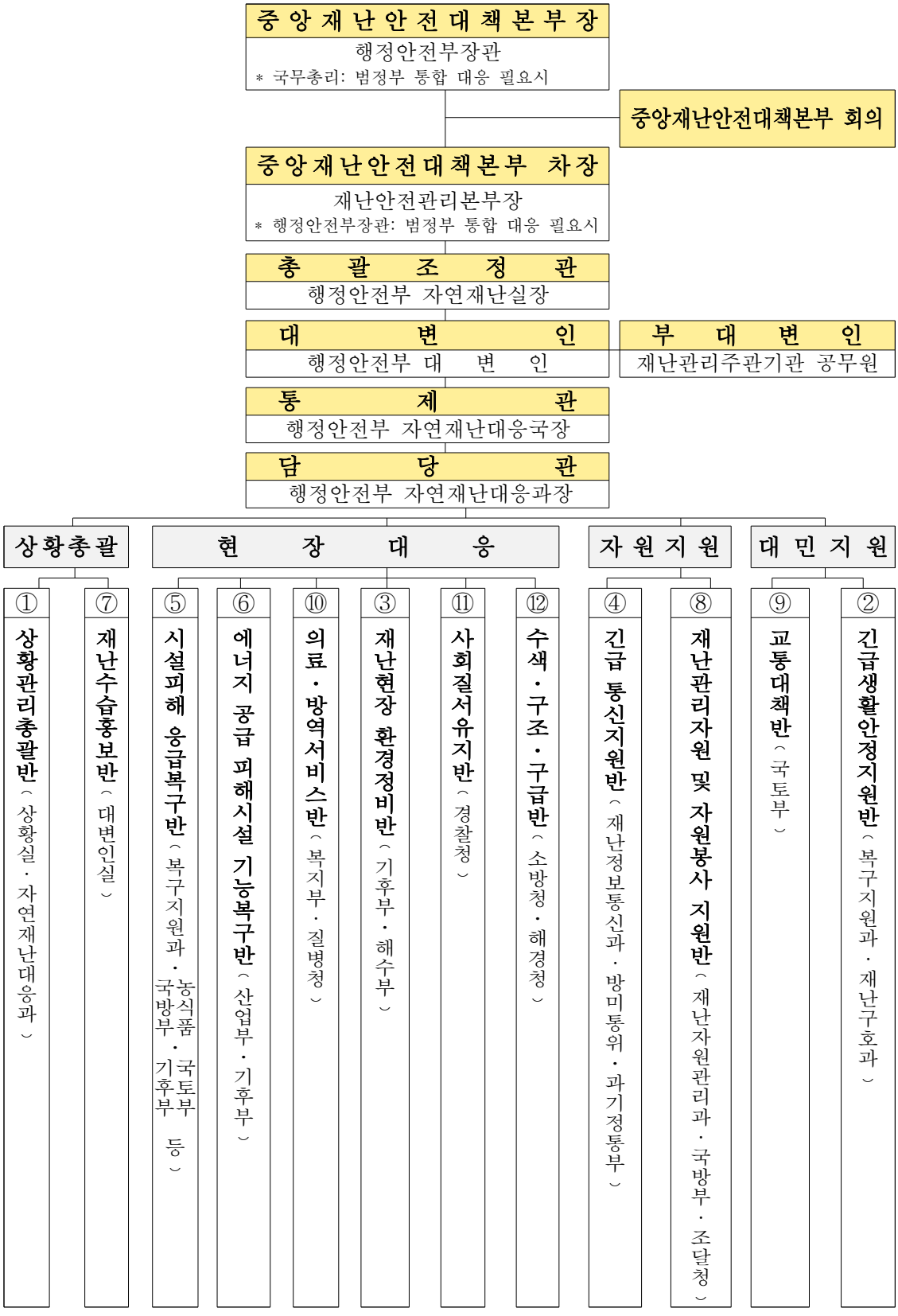
구분	임무 및 역할
대책지원본부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	• 중수본 및 지대본의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수습 지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행·재정상 조치, 직원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 등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등 •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등 재난 복구에 관한 사항
중앙합동재난피해자 지원센터 (행정안전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또는 인근에 설치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원 사항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시적 운영)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한전·가스안전공사·LH·법률구조공단 등), 민간기관(보험사금융기관 등)으로 구성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시·도, 시·군·구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 통합 운영 가능)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시·군·구 대책본부에 시·군·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경우,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 가능 • 시·도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설치·운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 ※약칭: 지대본	• 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등 • 시·군·구 지역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 결정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본부장: 부단체장) ※ 약칭: 통지본	• 시·군·구 지역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본부장 역할은 시·군·구 부단체장이 수행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지역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명) ※약칭: 지수본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 • 재난현장의 대응 및 수습 지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장)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담당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담당

구분	임무 및 역할
중앙구조본부 (해양경찰청장)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
광역구조본부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 관할 해역의 수난구호활동과 관련하여 타국 구조조정센터(RCC) 간 국제적인 협력 등
지역구조본부 (해양경찰서장)	• 관할 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수색구조세력의 효율적 운영 • 해상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대 편성 및 운영 •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
현장지휘소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조정·통제하는 등,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지칭
현장응급의료소 (보건소장)	•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4 위기관리기구의 대응체계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

구 성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	담당기관
① 상황관리 총괄반	가)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 및 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주재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 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자) 부처 및 관계 기관의 대처계획과 조치사항 파악·보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 국회 관련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태풍·호우·대설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등 재난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대응, 복구) 상황 관리 아) 접경지역 댐 홍수관리 및 4대강 보 현황 관리 자)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상황 등 관리 차)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카) 여론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근무자)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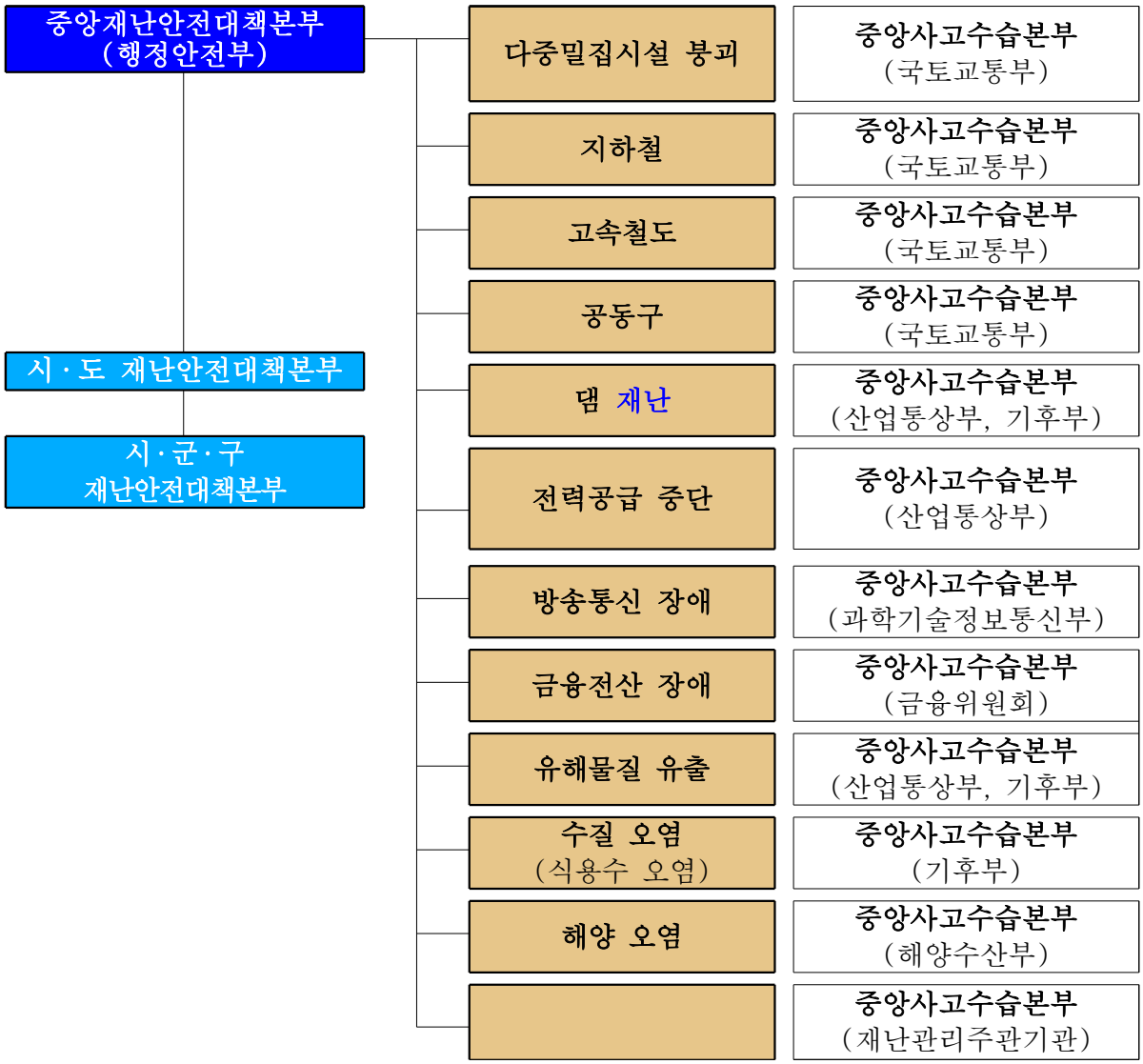
구분	임무	담당기관
②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담당관 관리 및 운영 마) 재난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바)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사)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아)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언론 대응 자)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차)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카) 현장과 지역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협조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③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및 자재 등 지원 다)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응급복구 현황 파악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국방부,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부
④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다)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마)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공급 지원 바) 에너지 단절 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 열), 산업통상부 (가스, 원유)
⑤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재난지역 방역 실시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응급의료 지원체계 신속 가동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⑥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나) 육상·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지도·확인 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 , 해양수산부
⑦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차량운행 통제(필요시 교통통제) 나)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다)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및	경찰청

구분	임무	담당기관
	안전관리 지원 라) 재난발생지역 대피 지원	
⑧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육상·해상)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나) 중앙통제단, 지역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현황 파악 등 다)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접근곤란 지역 인명구조·대피계획 확인 및 현황 파악	소방청, 해양경찰청
⑨ 긴급 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지원 다)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복구현황 파악 마) 재난안전통신망(PS-LTE) 재난현장 지원 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방미통위, 과기정통부
⑩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사전점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orea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KRMS) 현행화 및 운영 나) 피해지역의 재난관리자원 부족현황 파악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지원 응원 라) 다른 지역의 장비·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바)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사) 자원봉사활동 조정 지원 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⑪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라)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 시 대체수단 투입, 증편·연장 운영 현황 파악	국토교통부, 경찰청
⑫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 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조정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사용 현황 파악 바)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업무 아)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확인 및 시행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복구지원과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응체계

1)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대응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관 재난 및 사고 대응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매뉴얼에 따라 대응

3)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작성기관

재난 및 사고 유형		매뉴얼(표준 및 주요상황)	작성기관
지반 변형, 파괴	산사태, 사면 붕괴	산사태 매뉴얼	산림청
건축물 피해	건축물 파괴/붕괴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매뉴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피해	지하철	철도사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철도사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도로교통	도로터널 주요상황 매뉴얼	국토교통부
	항공기	항공기 사고 주요상황 매뉴얼	국토교통부
		항공운송마비 주요상황 매뉴얼	국토교통부
주요 기반시설 피해	공동구 파괴	공동구 매뉴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댐 파괴	댐 붕괴 매뉴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수지 붕괴	저수지 주요상황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전력공급 중단	전력 매뉴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스공급 중단	가스 주요상황 매뉴얼	산업통상부
	방송통신 장애	정보통신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전산 장애	금융전산 매뉴얼	금융위원회
위험물 시설 파괴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매뉴얼	기후에너지환경부
항만시설 및 선박 파괴	해양 선박	해양선박사고 매뉴얼	해양수산부
대규모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규모 수질오염 매뉴얼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매뉴얼	해양수산부
기타 재난 및 사고		소관피해 매뉴얼	소관부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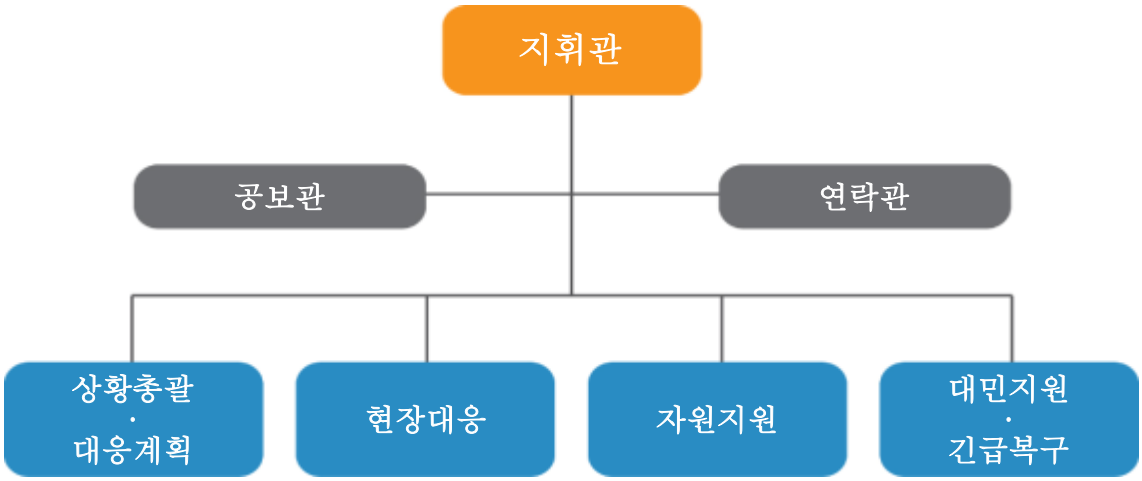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사고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 3. 지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댐 붕괴 5. 전력 사고 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지하철 사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 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1.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2. 해양 선박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소방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국가유산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다.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1)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편제

○ 재난현장 대응·수습 편제는 공보, 연락, 상황총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긴급복구)으로 표준화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 현장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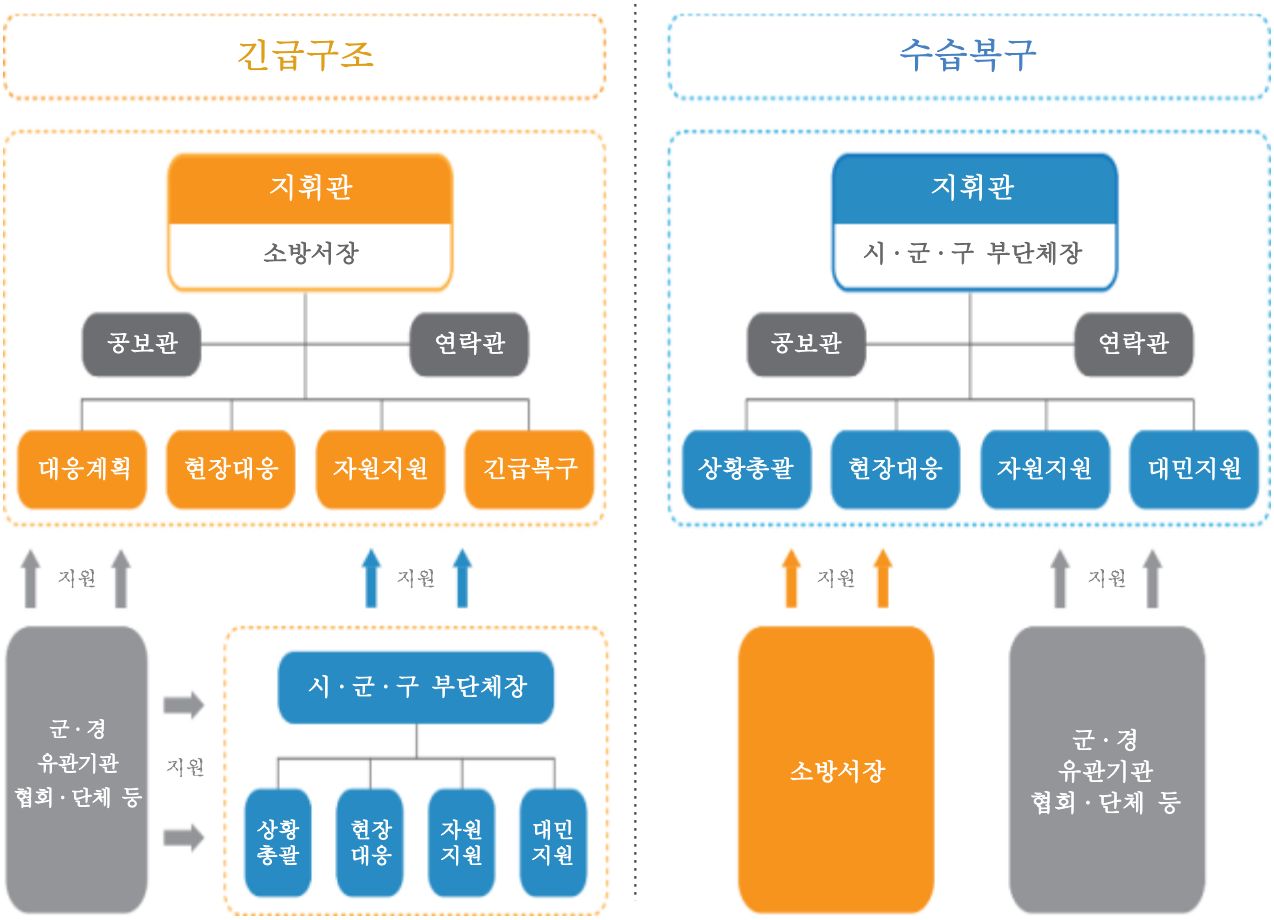
– (긴급구조 상황)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경이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비긴급구조 상황) 각 유형별 소관기관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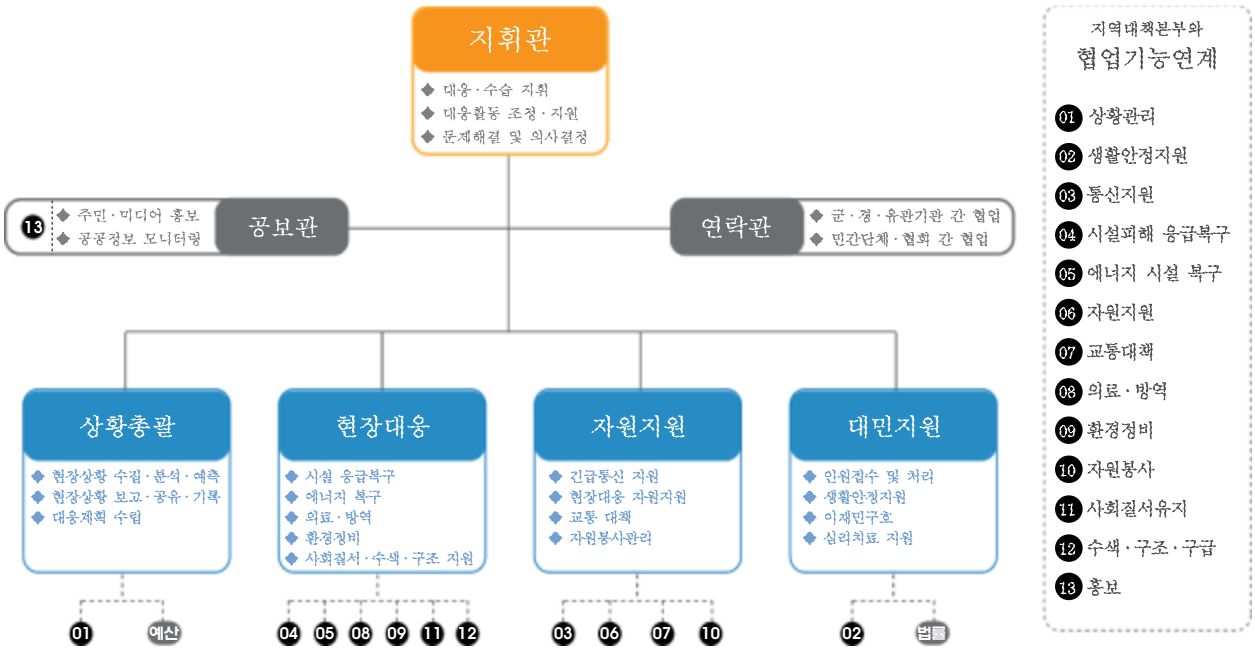
○ 수습복구

–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습·복구 현장 지휘

– 소방·해경은 기관의 기본 편제를 가지고 지원에 참여하고, 군·경·유관기관·협회·단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복구를 지원



(3)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2. 방 침
3. 위기징후 감시
4. 위기 평가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6. 비상근무체계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표

태풍·호우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2 방침

가. 태풍·호우 피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1) 각종 시설물의 방재 설계기준 규정 및 이행 점검

(2)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도입

나. 태풍 진로 예측의 정교화 및 신속한 경보, 유관기관 전파

다. 태풍·호우 재난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의 확립 및 점검

(1) 태풍·호우 관련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 및 점검

(2)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의 확보, 비축

(3) 태풍·호우 재난 대비 교육 훈련 및 대국민 홍보 지속 실시

(4) 초기대응 등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라. 태풍·호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및 조기 복구

3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형태	위기징후 목록	감시수단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1. 태풍 한반도 내습	1.1. 빈발시기 도래 (5.15~10.15)	기상예보	기상예보 모니터링	관심	대책기간 운영, 모니터링 강화
	1.2. 태풍 예비특보 또는 특보 발표 시	기상예보	기상예보 모니터링	주의~심각	상황판단회의 운영, 기관별 대비태세 점검, 총력 대응
2. 국지적 집중호우로 침수, 범람 발생	1.1. 빈발시기 도래 (5.15~10.15)	기상예보	기상예보 모니터링	관심	대책기간 운영, 모니터링 강화
	1.2. 호우 예비특보 또는 특보 발표 시	기상예보	기상예보 모니터링	주의~심각	상황판단회의 운영, 기관별 대비태세 점검, 총력 대응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1)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주관기관,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이하 "주관기관 등")은 **위기징후의 활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위하여 **징후감시체계를 구축**
○ 주관기관 등은 포착된 위기징후 정보를 관련 부처·기관에 제공하고, **위기징후 분석 결과**와 **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에 제공**

(2) 감시체계 및 운용

평상 시	→	위기징후 발견	→	재난관리	→	위기종료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즉시 전파·보고 위기경보 발령		위기수준관리 위험 저감 및 제거		위험 해소

① 감시 주체 : 재난관리주관기관(필요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정보수집)

② 감시 내용

– ‘가. 위기징후 목록’에서 규정한 위기형태에 따른 위기징후들을 감시수단을 통해 상시 감시한다.

– 감시결과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통해 감시수단, 감시결과, 조치사항(대비·대응), 위기경보(발령했을 경우)를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NDMS에 입력한다.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유관실무기관 등

③ NDMS 입력 주기

– (정기 보고) 주1회(매주 목요일까지) 입력

※ 위기징후가 없어도 한주간의 위기징후 감시결과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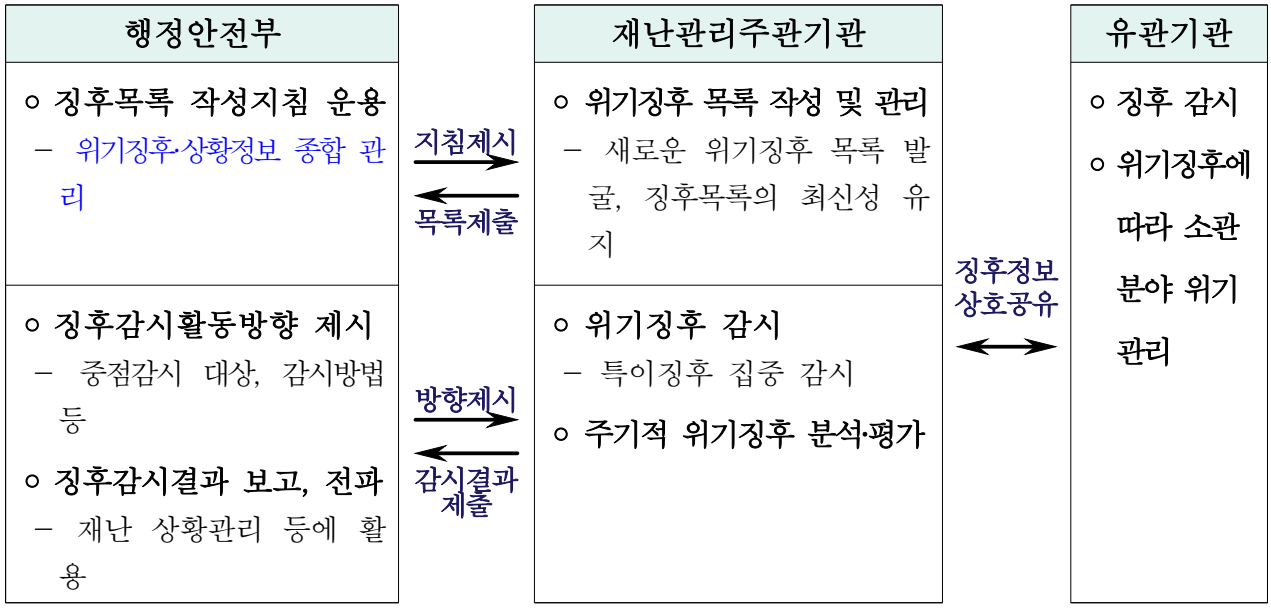
– (수시 보고) 징후 발견 또는 위기경보 발령조정 시 즉시 전파보고 및 입력

④ 대통령실 보고

–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총괄과)에서 주관기관이 NDMS에 입력한 자료를 종합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매주 금요일, 필요시 수시)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위기징후 감시제도 운용


행정안전부
○ 징후목록 작성지침 운용
– 위기징후·상황정보 종합 관리
○ 징후감시활동방향 제시
– 중점감시 대상, 감시방법 등
○ 징후감시결과 보고, 전파
– 재난 상황관리 등에 활용
지침제시
목록제출
방향제시
감시결과 제출
재난관리주관기관
○ 위기징후 목록 작성 및 관리
– 새로운 위기징후 목록 발굴, 징후목록의 최신성 유지
○ 위기징후 감시
– 특이징후 집중 감시
○ 주기적 위기징후 분석·평가
징후정보 상호공유
유관기관
○ 징후 감시
○ 위기징후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 관리

4 위기 평가

가.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1조(위기평가)

나. 구성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주관), 자연재난대응과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기상청 예보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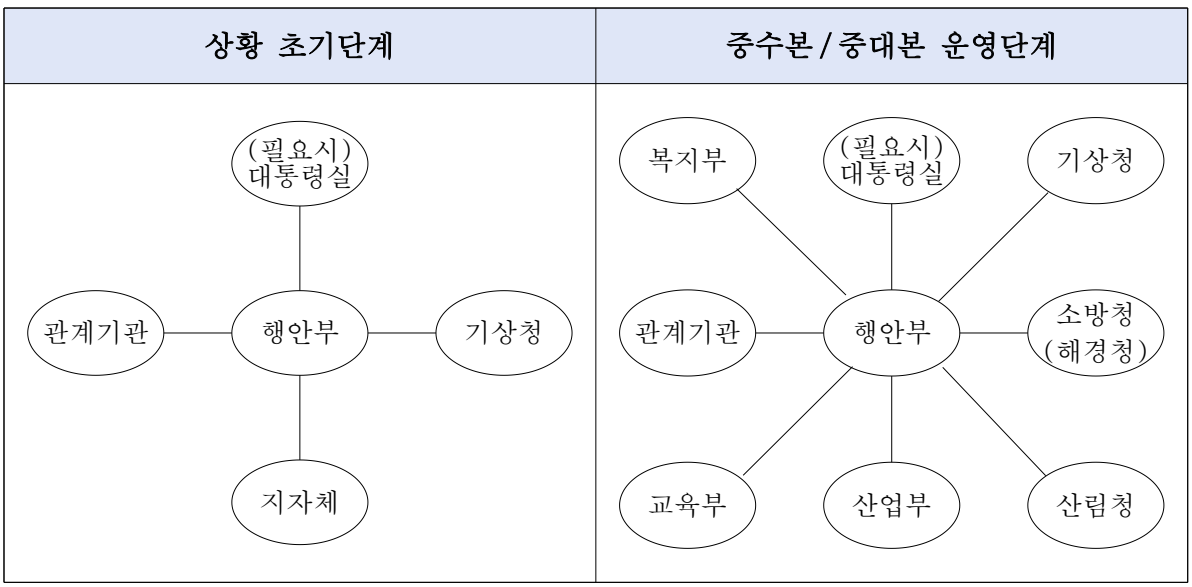
긴급한 경우 참석자 중 직제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

야간, 공휴일 등 신속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담당과장 또는 상황담당관 등이 유 무선 또는 문자 SNS 등으로 간략히 협의 가능, 이 경우 회의 결과는 문자 SNS를 통해 전 참석대상자에게 전파 공유

다. 역할 : 수집된 상황정보를 종합하여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위기경보 발령, 변경 및 해제

라. 운영 : 대면회의(회의실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를 통해 위기수준을 평가하되, 시간이 급박할 경우에는 유선, 영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

관계기관 합동 위기평가 회의 구성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table>
<tr><th>종류</th><th>판단기준</th><th>주요활동</th><th>비상단계</th></tr>
<tr><td>관심
(Blue)</td><td>•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호우 빈발 시기</td><td>징후
감시활동

예찰·점검</td><td rowspan="2">초기대응
단계</td></tr>
<tr><td rowspan="2">주의
(Yellow)</td><td>• 집중호우 빈발 시기(장마철 등)</td><td rowspan="2">협조체계
가동

대응태세
확립</td></tr>
<tr><td>•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거나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td><td>중대본
비상1단계</td></tr>
<tr><td>경계
(Orange)</td><td>•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td><td>대비계획
점검</td><td>중대본
비상2단계</td></tr>
<tr><td>심각
(Red)</td><td>•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td><td>즉각 대응
태세 돌입</td><td>중대본
비상3단계</td></tr>
</table>

※ 태풍, 호우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 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나. 위기경보 절차

(1) 행정안전부는 기상청의 기상정보(태풍·호우정보)를 바탕으로 태풍·호우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발령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과 동시에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태풍·호우 위기경보 “관심” 수준 유지(별도 통보 없음)

(2) 위기 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3) 주관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Red)경보 발령·해제 시**에는 **대통령비서실(소관비서관실)·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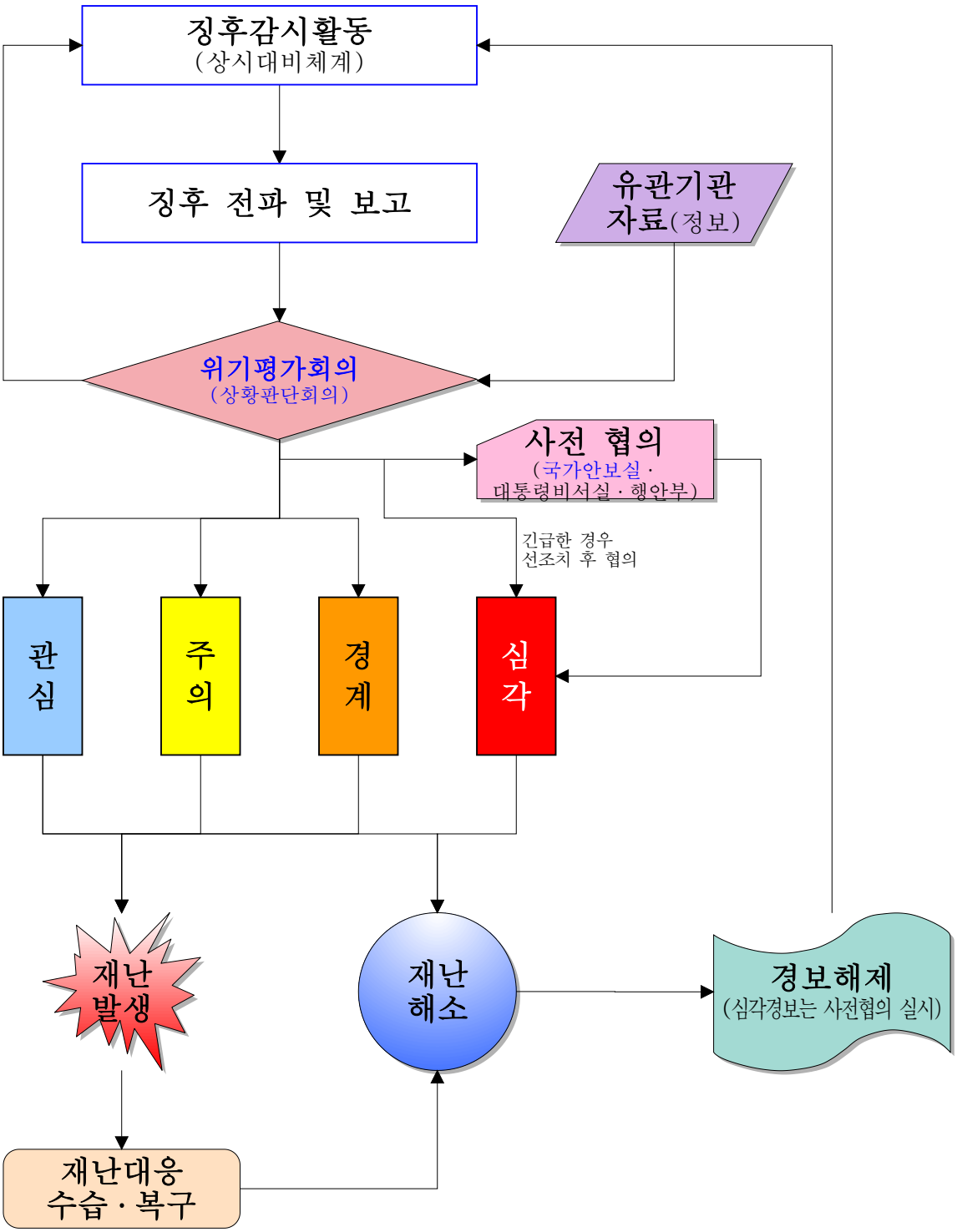
(4)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소관비서관실)**,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

(5) 중수본부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수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6) 유관기관(기상청 등)은 적절한 경보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징후와 관련된 자료(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

(7)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주관기관은 소관 시설·업무 및 법령과 관련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위기경보 발령체계


징후감시활동
(상시대비체계)
징후 전파 및 보고
유관기관
자료(정보)
위기평가회의
(상황판단회의)
사전 협의
(국가안보실 · 대통령비서실 · 행안부)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 협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재난
발생
재난
해소
경보해제
(심각경보는 사전협의 실시)
재난대응
수습 · 복구

6 비상근무체계

가. 구성원별 임무

구분	주요 임무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범정부 통합: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범정부 통합: 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 시 직무 대행, 재난 관련 업무 전반의 총괄
총괄조정관 (자연재난실장)	• 비상단계 실무반 업무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 (자연재난대응국장)	• 준비단계 실무반 업무 총괄, 비상단계 시 총괄조정관 보좌
담당관 (자연재난대응과장)	•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 보좌
실무반	•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업무 수행(13개 협업기능 운영) * (반장) 중대본 비상 1단계 : 상황담당관 / 2~3단계 : 자연재난실 과장

나.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근무기준</th><th>근무편성</th><th>근무인원</th></tr>
<tr><td rowspan="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td><td>행정안전부</td><td>관심</td><td>• 호우주의보 3개 시·도 이하에 발표
• 태풍정보 발표
• 집중호우 빈발 시기 (장마철 등)</td><td>• 보고서 작성반(2명)
– 재난상황관리팀/2명(상황실 2)
• 정보수집반(7명)
– 행정지원 및 분석팀/2명(자연재난대응과 2)
– 중앙행정기관 지원팀/2명(기상청 1, 경찰청 1)
– 유관기관 지원팀/3명
(국립공원 1, 수자원공사 1, 한수원 1)</td><td>9명</td></tr>
<tr><td>초기대응</td><td></td><td></td><td></td><td></td></tr>
<tr><td>1단계</td><td>주의</td><td>• 호우주의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 호우경보 3개 시·도 이상에 발표
• 태풍 예비특보 발표</td><td>• 실무반장 1명(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 상황총괄반(15명)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상황실 2, 기상청 1, 경찰청 1, 국립공원 1,
수자원공사 1, 한수원 1)
– 상황보고서 작성팀/6(재난안전관리본부 6)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2명
(자연재난대응과 2)
• 12개 협업기능반(α명)</td><td>16+α명</td></tr>
<tr><td>2단계</td><td>경계</td><td>• 호우경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시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td><td>• 실무반장 1명(재난관리실 과장)
• 상황총괄반(16명)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상황실 2, 기상청 1, 경찰청 1, 국립공원 1,
수자원공사 1, 한수원 1)
– 상황보고서 작성팀/6명(재난안전관리본부 6)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팀/3명
(자연재난대응과 3)
• 12개 협업기능반(α명)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td><td>17+α+β명</td></tr>
<tr><td>3단계</td><td>심각</td><td>• 호우경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및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전망 시
•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td><td>• 실무반장 1명(재난관리실 과장)
• 상황총괄반(24명)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상황실 2, 기상청 1, 경찰청 1, 국립공원 1,
수자원공사 1, 한수원 1)
– 상황보고서 작성팀/12명(재난안전관리본부 12)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팀/5명
(자연재난대응과 5)
• 12개 협업기능반(α명)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td><td>25+α+β명</td></tr>
<tr><td colspan="6">①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 재난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시간·인원, 비상단계 등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해제는 비상근무 단계 발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위단계로 조정·운영한다.
③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 등을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 등을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풍수해 비상단계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④ 도(道)는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이상의 지역(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제주도남부, 제주도동부를 말한다)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td></tr>
</table>

Ⅳ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